

# [ ] 수시검사    재검사신청서 [ ] 정기검사

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5일(개선시간 제외)
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	①상호(명칭)	②사업자등록번호
	③대표자	④생년월일
	⑤주소	(전화번호: )
	⑥사업장소재지	(전화번호: )

자동차	⑦자동차 명칭(형상)	⑧자동차 형식(용도)	⑨엔진형식	⑩차종	⑪사용연료	⑫제작사		
	⑬인증번호			⑭검사연월일				
								년    월    일
	⑮검사결과							
	모집단의 크기	표본의 크기	기준초과 대수	검사항목	기준	평균치	최저치	최고치
	대	대	대	일산화탄소				
				탄화수소				
				질소산화물				
				매연				
				입자상물질				
			입자개수				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국립환경과학원장**    귀하

첨부서류	1.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.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.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### 작성방법

1. ⑩란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2. ⑮란의 "모집단의 크기"는 최초검사 시의 검사대상 자동차의 총 생산대수를 적습니다.
3. ⑮란의 "표본의 크기"는 최초검사 시의 검사대상 자동차의 수를 적습니다.
4. ⑮란의 "기준초과 대수"는 최초검사 시의 검사대상 자동차 중 기준초과 자동차의 수를 적습니다.

### 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국립환경과학원(교통환경연구소)